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이동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-5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6. .

발 의 자 : 이동주, 강희향, 김운정,  
김효식, 문정애, 백남환,  
송병길, 유호렬, 이봉수,  
이필레, 이학래, 전승학,  
한일용, 허정행

## 1. 개정사유

개인택시·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여,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·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을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5급지 주차장에서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인하함.(안 제12조제3항)

3. 관계법규 : 「주차장법」 등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6. 6. 13. ~ 2016. 6. 20.

나. 붙임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2조제3항 중 “4·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”을 “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·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·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12조(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----- ----- ----- ----- .</p>